

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2. 14.(수) 09:32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호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○ 제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○ 제6차 및 제7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○ 제6차 및 제7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의결안건 ‘가’ 및 ‘나’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, 그 외의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함

Ⅶ 의결사항

가.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(2018-08-47) (비공개)

나.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(2018-08-48) (비공개)

다. SK텔레콤(주)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(2018-08-049)

- 재정 신청인이 피신청인(SKT)을 대상으로 신청한 장애인복지할인 누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재정 신청 건에 대한 심의결과, 피신청인의 복지할인 적용 누락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케이티파워텔(주)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(2018-08-50)

- 재정 신청인이 피신청인(케이티파워텔)을 대상으로 신청한 TRS무선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피신청인은 무선서비스의 사업전환(TRS→LTE)으로 TRS무선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Ⅷ 보고사항

가.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최성호 기획조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위원회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관련 사항 중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개정대상 : 「방송법」, 「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」,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SK텔레콤(주) 재정사건에 대한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
- 신청인이 피신청인(SKT)을 대상으로 신청한 장애인복지할인 누락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합의 중재를 위하여 알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및 신청인이 알선(안)을 거부함에 따라 재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다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'에 대해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, 방송법 상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기준을 준용하여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 및 별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접수함

9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2월 21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32)